

영등포구의회
2005년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

2005. 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추경예산안은

-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사업의 특별교부금이 2005.12.9 서울시로부터 5,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예산액 10억중 7억 8,935만원을, 년내에 공사비 집행이 불가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예산액 25억 9,300만원 중 부지매입비로 23억 2,236만 8천원을 집행하고, 2억 6,063만 6천원을 설계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 보조사업인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의 서울시 보조금이 2005.11.15 교부되어, 년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세출예산의 명시이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새주소 개선추진사업비 5,900만원의 용도는 도로명판 및 건물명판 제작 설치에 있으며, 2005.12.9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년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48억6천만원이며, 2005년 예산액 10억 중 설계비로 2억1,065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예산 7억 8,935만원을 2006년도에 공사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본 예산은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불용하여 서울시에 반납하기 보다는 명시이월하여 우리구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82억 59백만원이며, 2005년 예산액 25억 93백만원중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23억 3,236만 4천원을 제외한 잔액 2억 6,063만 6천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교부금을 불용하지 않고, 2006년도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비는 2005년10월에 수립된 서울시 자치구 공연장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구에 2005.11.15 특별교부되어, 년내 사업집행이 불가하므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고드립니다.

2005. 12. 9
보고자 : 김 찬 재